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안)

2011. 11.

지 식 경 제 부
우정사업본부

1. 개정이유

기능10급 공무원 계급 폐지, 공무원 채용 상한 연령 폐지, 직원의 공개채용 강화 등 정부의 인사관련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별정우체국 직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액 및 환수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임용, 복무, 징계, 보수 등에 관한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기능10급 폐지에 따라 **집배10급 계급을 폐지**하고, 현 근무자가 단계적 승진 가능토록 적용 특례 신설(안 제4조 별표 1, 부칙 제1조, 제2조)

나. 직원 **채용 상한 연령을 폐지**하여 보다 많은 국민에게 응시기회를 부여(안 제7조)

1) 사무원은 18세 이상

2) 집배원은 18세 이상

다. 직원 채용 시 공개 경쟁 원칙을 준수하고, 시험 실시 기관을 상향 조정하여 **채용의 투명성 확보**(안 제3조제1항)

1) 기존 : 총괄우체국장의 승인을 받아 별정우체국장이 공개 채용

2) 변경 : 지방우정청장이 공개채용 시험을 거쳐 채용후보자를 추천하고 별정우체국장이 임용

라. 법에서 위임된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에 관한 절차 규정** (안 제16조의6, 제16조의 7 신설)

1) 재직 중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을 한 사람이 재임용되는 경우, 초과지급의 경우 이미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환수고지서 및 정산고지서 발행

2) 환수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의 절차에 따름

마. 신규 임용, 신원 보증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지 않고** 전자정부법에 의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안 제5조제1항제4호)

바. 급여 인상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봉급표상 봉급액의 81%에서 68%로 하향 조정**(안 제16조의3 제1항, 제16조의8제3항)

사. **모성보호, 공무상 질병에 관한 휴직제도 개선**(안 제22조 제2항 제1호, 제22조제3항제1호)

1) 육아휴직 대상 자녀 상한 연령 확대(만 6세→ 만 8세)

2) 공무상 질병에 대한 휴직기간 연장(1년→3년)

아.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 및 **적용방법 개선** (안 제27조제2항제1호, 제27조의3제1항)

1)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에 셋째 이후의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모두를 산입

2)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제외

자.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범위 확대**(안 제29조)

1) 동원 훈련에 참가할 때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3)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4)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할 때

차. **모성보호, 불임치료 시술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휴가 개선**(안 제30조 제8항, 제9항)

1) 여성 직원의 유산이나 사산 시 임신기간 11주 이내는 5일, 28주 이상은 최장 90일까지 특별휴가 부여, 총 5단계로 확대 (현행은 임신기간 16주 이상인 경우 30일, 28주 이상인 경우는 90일까지 3단계 부여)

2) 인공수정, 불임시술 당일 1일의 특별휴가 신설

카. 일부 **경조사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30조 제1항 별표6, 제31조)

1) 본인결혼 : 7일→5일, 자녀결혼 : 0일→1일, 배우자출산 : 3일→5일, 형제자매사망 : 0일→1일, 입양 : 0일→ 20일

2) 경조사 휴가일수 산정 시 토·공휴일을 산입일수에서 제외

타. 징계 규정에 **강등 처분**을 **신설**하고, 징계 처분에 관한 절차 규정 (안 제36조제1항,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1) 중징계 해당 직원은 징계위원회를 지방우정청으로 상향 조정

2) 징계 의결 요구 기준은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징계 양정을 준용

파.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횡령, 유용의 경우 5배내의 **징계부가금 부과규정 신설**(안 제36조의2)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령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지식경제부령 제 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에서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의 임용 등) ①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피지정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장의 임용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별정우체국장임용추천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장으로 임용되는 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앞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③피지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 추천한 국장의 면직을 관

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피지정인은 임용 추천한 국장이 임용된 후 **3년 이내에는** 면직을 요청할 수 없다.

제3조(직원의 채용) **①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채용지침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후보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채용 후보자 중에서 직원을 임용하여야 한다.

제4조(직원의 직종 및 직급) 직원의 직종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구비서류) ①신규 임용되는 국장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직원은 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지정인이 국장으로 임용되는 때에는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의 사본 제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최종학력증명서 1통
2. 경력증명서 1통
3. 면허증 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사본 1통
4.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5.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실시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통

6. 사진(탈모상반신명함판) 6매

7. 민간인신원진술서 4통

8. 선서문(국장에 한한다)

9.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원보증서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원보증보험증권 1통(국장 및 제4조의 구분에 따른 사무원의 경우에 한한다)

10. 신원보증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되는 국장 및 직원, 신원보증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장 및 직원을 신규 임용할 때에는 국장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직원에 대하여는 국장이 각각 임용 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직원의 채용연령) ①직원의 신규채용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원 : 18세 이상

2. 집배원 : 18세 이상

②우정사업본부 및 하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면직되는 직원을 계속하여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그 채용연령의 상한은 제10조제1항 따른 정년 미만으로 한다.

제7조의2(시보 임용) ①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이 국장 또는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한다.

②휴직한 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국장 및 직원이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에 대하여 국장은 직원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시킬 수 있다.

제7조의3(시보임용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1. 정규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의 국가·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에 상당하는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국장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퇴직당시의 직급이나 그 이하의 직급

에 상당하는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제8조(당연 퇴직) ①법 제3조제3항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별정우체국 지정이 해지 또는 취소된 때에는 국장 및 직원은 당연 퇴직된다. 다만, 피지정인의 추천에 의하여 임용된 국장이 그 별정우체국의 업무를 인수하여 새로이 피지정인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장 또는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때로부터 당연 퇴직된다.

제9조(직권면직) ①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을, 국장은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우정사업본부 및 하부조직의 개편 또는 정원 조정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긴 때
2.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한 때
3. 휴직기간 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 채용된 자가 그 자격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관할 지방우정청장 및 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또는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 또는 총괄우체국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제4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한다.

⑥제1항제3호에 따른 직권 면직일은 휴직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 7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직원의 임면보고) 국장은 직원을 임면한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우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승진) 직원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제11조의3(승진임용의 방법) ①총괄우체국장은 별정우체국직원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원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직원을 승진 임용한 후 그 결과를 총괄우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별정우체국직원승진심사위원회는 총괄우체국 단위로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4(승진 소요 최저 연수 등) 직원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승진 후보자명부의 작성,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

한 규정」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1조의5(직원의 전보) ①총괄우체국장은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정우체국의 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는 연고지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의6(전보의 제한) 총괄우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정우체국의 직원을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1. 우정사업본부 및 하부조직의 개편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원을 전보하는 경우
2.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11조의7(정원의 조정)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업무량과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별정우체국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호봉의 획정) ①보수지급을 위한 호봉의 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되 국장 및 사무원의 경우 일반직공무원 호봉획정

기준을, 집배원의 경우 기능직공무원의 호봉획정에 관한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②국장 및 직원이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환산한 경력연수를 합산하여 정산한 호봉으로 한다.

제13조(승급) 호봉 승급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되 국장 및 사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기준을, 집배원의 경우 기능직 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제14조(국장 및 직원의 보수) ①우정사업본부장은 국장 및 직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월액과 수당상당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봉급월액과 수당상당액은 국장은 별표3, 직원은 별표4를 각각 적용한다.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보수 지급 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수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의2(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우정사업본부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제16조의3(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통보) ①명예퇴직수당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②우정사업본부장은 매년 2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인원, 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각 별정우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4(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절차 등)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예퇴직원과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급여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총괄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우체국장은 지체 없이 그 신청서류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류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상위직 직원

2. 장기근속 직원

④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총괄우체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명예퇴직일까지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의5(명예퇴직수당의 반납)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퇴직한 직원이 다시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8을 제16조의8, 제16조의9, 제16조의10으로 각각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16조의6, 제1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6(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①법 제10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사람이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 산정 대상기간(별정우체국 직원 퇴직 당시의 정년 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종전 16조의6은 16조의 8로 이동]

제16조의7(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1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③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을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재임용 하고자 하는 국장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재임용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체 없이 환수고지서를 발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한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국장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해당 직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6조의6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 요청을 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16조의7은 16조의 9로 이동]

제16조의8(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 ①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장 또는 직원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제1항3호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 취소일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국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 하며,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정산금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조기퇴직 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제16조의9(조기퇴직수당의 지급절차) ①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조기퇴직원과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조기퇴직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총괄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우체국장은 지체 없이 그 신청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신청서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괄우체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10(세부지침) 근속연수의 계산, 잔여기간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 등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그 밖에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3까지, 제28조에서 제31조까지, 제33조, 제3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성실복무 의무) 국장 및 직원은 신속·정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친절과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18조(근무기강의 확립) 국장 및 직원은 법령과 우정사업본부장·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근무시간) 국장 및 직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의한다.

제20조(국장직무의 대행) 국장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총괄우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한 사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휴직) ①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4.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②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장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직원에 대하여는 국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직원(국장을 포함한다)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삭제<2010.6.29.>

③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3년 이내로 하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한 인정 여부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결정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자직원의 경우에는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5. 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6. 삭제<2010.6.29.>

④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휴직기간을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에 산입한다.

제23조(휴직의 효력) ①휴직 중인 국장 및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국장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직원은 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우정청장 및 국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이 끝난 국장 및 직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제23조의2(휴직자의 복직)관할 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복직되는 때에는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복직시켜야 한다.

제24조(휴직기간 중의 보수) ①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

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그 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직위의 해제) ①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에 대하여, 총괄우체국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삭제

②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위 해제된 자에게 3개월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6조(휴가의 종류) 국장 및 직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27조(연가일수) ①국장 및 직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일
6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②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하되 그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며,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국장 또는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국장 또는 직원

2. 제27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국장 또는 직원

제27조의2(연가계획 및 허가) ①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국장 및 직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국외여행이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국장 또는 직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해의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의3(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②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 일수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뺀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해당연도 휴직기간(개월)×해당연도 연가일수

12(월)

③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2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제28조(병가) ①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병가일수가 7일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공가)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할 수 있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삭제
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제30조(특별휴가) ①국장 또는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본인의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산후에 45일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여성인 국장 또는 직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인 국장 또는 직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7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삭제<2006.2.3.>

⑦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장 및 직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국장 및 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조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여성으로서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사산한 경우 그 국장 또는 직원이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국장 또는 직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31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33조(복장 및 신분증 등) ①국장 및 직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에게, 국장은 직원에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분증을 발급한다.

③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이 퇴직하거나 사

망한 때에는 발급한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6조(징계) ①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직권으로 면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국장 및 직원(직원의 경우에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방우정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장직원징계위원회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에, 직원**(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이 총괄우체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에 각각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수탁자로서의 본분에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은 제1항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 및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징계의 의결요구·의결절차 및 그 집행과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중 보통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징계 의결 요구 기준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36조에 따라 국장 및 직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중 징계부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중징계), 감봉·견책(경징계)으로 구분한다.**

제38조(징계의 효력) ①**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것이며,**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 중 국장 또는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④국장 또는 직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승진 또는 승급될 수 없다.

1. **강등・정직 : 18월**
2. 감봉 : 12월
3. 견책 : 6월

제39조(해임 등의 보고)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을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인사 관계 서류의 관리) ①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에 대한 인사 관계 서류를, 국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 관계 서류를 작성・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장 또는 직원의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 항상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의 임용 시에 구비한 서류와 임용 후의 신상변동에 관한 서류는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보존하여야 한다.

④국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말소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중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보증인의 확인) ①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이 제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신원보증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보증여부를 신원보증인에게 조회하거나 직접 면접하여 확인을 받아 이를 해당 신원보증서에 첨부・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원 보증시 당해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과 국장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

제42조(보증인의 재산조사 등) ①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신원보증인의 재산상태 및 그 적부의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재산증명서의 발급기관에 조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결과 보증인의 재산 변동으로 인하여 보증인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증인을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장 또는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보증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해당 국장을, 국장은 해당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4조의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직원의 직종 및 직급(**제4조 관련**)

직종	사무원			집배원			
직급	사무장	사무주임	**사무원**	집 배 6 급	집 배 7 급	집 배 8 급	**집 배 9 급**

제14조 제2항 관련 별표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개정 2011.00.00 >

직원의 보수표(제14조제2항관련)

직종 및 직급		보 수
사무원	사무장	일반직7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각종수당 상당액
	사무주임	일반직8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각종수당 상당액
	사무원	일반직9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각종수당 상당액
집배	집배6급	기능6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각종수당 상당액
원	집배7급	기능7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각종수당 상당액
	집배8급	기능8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각종수당 상당액
	집배9급	기능9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각종수당 상당액

제30조제1항 별표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30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제16조6 관련 별표7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별표 7]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16조의6 관련)

구분	적용대상	산 정 기 준
환수금	1. 법 제10조의2 제3항제1호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2. 법 제10조의2 제3항제2호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 월수/2)}
	3. 법 제10조의2 제3항제3호 해당자	가.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전액
정산금	법 10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임용 후의 근무기간이 환수금 산정대상기간(명예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보다 짧은 자	재임용시 환수금액(이자 제외)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초과 10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수/2)}

비고

1.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은 명예퇴직 당시에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 별표 5의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을 말한다.
2. "재임용 후 근무 월수"는 재임용일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말한다.
3. 별표 1의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에 따른 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이 경과된 후 재임용되는 자는 환수대상에서 제외한다.
4. 재임용후 퇴직시의 정산금 지급액은 재임용 당시의 환수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00.00>

별정우체국장임용추천서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 사람을 우체국장으로 임용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별정우체국피지정인 (인)

○○**지방우정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00.00>

선 서

본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우체국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에라도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지식경제부공무원 및 소속직원과 융화 단결하고, 모든 고객에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봉사한다.

위에서 선서한 사항에 대하여는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우체국장 (서명 또는 인)

○○<u>지방우정청장</u> 귀하

별지 제3호 서식을 다음과 한다.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1.00.00>

신원보증서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 사람을 00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 국장 직원) 으로 (지정 채용) 함에 있어 향후 2년간 직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변상책임이 확정되고 위 사람이 변상하지 못할 때에는 본인 등이 공동하여 변상할 것을 서약하고 보증하기에 본 신원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대보증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대보증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대보증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u>지방우정청장</u> 귀하

별지 제4호 서식을 다음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00.00>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table>
<tr><td rowspan="6">신청인기재란</td><td colspan="2">①소속</td><td></td><td>②직종구분</td><td>□사무원
□집배원</td><td>③직 급
(호봉)</td><td></td></tr>
<tr><td rowspan="2">④성명</td><td>한글</td><td></td><td>⑤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한자</td><td></td><td>⑥주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⑦전화번호
(자택)</td><td></td><td>⑧근속기간</td><td>년 월</td><td>⑨정년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⑩비위·형벌
사항</td><td>□있음
□없음</td><td colspan="4">□비위조사중 □수사진행중 □형사재판 계류중
□형확정의 경우·확정일 : . . .
·형 량 :</td></tr>
<tr><td colspan="8"></td></tr>
<tr><td rowspan="5">소속기관기재란</td><td colspan="2">⑪수당청구액</td><td colspan="6">원</td></tr>
<tr><td colspan="2">⑫정년잔여기간(수당지급대상기간)</td><td>년 월
(년 월)</td><td>⑬산출내역</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 rowspan="2">⑭비위·형벌
사항 확인</td><td>□있음
□없음</td><td colspan="5">□비위조사중 □수사진행중 □형사재판 계류중
□형확정의 경우·확정일 : . . .
·형 량 :</td></tr>
<tr><td>확인</td><td>인사담당</td><td>(인)</td><td>연금담당</td><td>(인)</td><td>감사담당</td><td>(인)</td></tr>
<tr><td colspan="8"></td></tr>
</table>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서약하며,「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급여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국장) [인]

우체국장 귀하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별정우체국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우체국장 [인]

○○**지방우정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을 다음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00.00>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

<table>
<tr><td rowspan="6">신청인기재란</td><td colspan="2">①소속</td><td></td><td>②직종구분</td><td>□사무원
□집배원</td><td>③직 급
(호봉)</td><td></td></tr>
<tr><td rowspan="2">④성명</td><td>한글</td><td></td><td>⑤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한자</td><td></td><td>⑥주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⑦전화번호
(자택)</td><td></td><td>⑧근속기간</td><td>년 월</td><td>⑨최초
임용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⑩비위·형벌
사항</td><td>□있음
□없음</td><td colspan="4">□비위조사중 □수사진행중 □형사재판 계류중
□형확정의 경우·확정일 : . . .
·형 량 :</td></tr>
<tr><td colspan="8"></td></tr>
<tr><td rowspan="4">소속기관기재란</td><td colspan="2">⑪수당청구액</td><td colspan="6">원</td></tr>
<tr><td colspan="2">⑫산출내역</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 rowspan="2">⑬비위·형벌
사항 확인</td><td>□있음
□없음</td><td colspan="5">□비위조사중 □수사진행중 □형사재판 계류중
□형확정의 경우·확정일 : . . .
·형 량 :</td></tr>
<tr><td>확인</td><td>인사담당</td><td>(인)</td><td>연금담당</td><td>(인)</td><td>감사담당</td><td>(인)</td></tr>
<tr><td colspan="8"></td></tr>
</table>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제1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확인서 1부
3.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국장) [인]

우체국장 귀하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별정우체국직원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우체국장 [인]

○○**지방우정청장** 귀하

제4조 별표1, 제14조 제2항 관련 별표4의 개정에 따른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 호, 2011. .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별표1의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배10급 정원 조정 및 집배10급 직원에 대한 집배9급으로의 승진 임용에 관한 특례)국장은 이 규칙 공포 당시 집배10급으로 근무 중인 직원을 제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배9급 직원으로 각각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

1. 이 규칙 공포일 현재 집배10급 임용일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직원 : 이 규칙 공포일부터 10일 이내

2. 이 규칙 공포일 현재 집배10급 임용일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경과한 직원 : 2011년 12월 31일

3. 이 규칙 공포일 현재 집배10급 임용일부터 2년 미만 경과한 직원 : 2012년 5월 23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국장 및 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징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용 및 채용	제2장 임용
제2조(국장의 임용등) ①「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지정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별정우체국의 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의 임용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별정우체국장 임용추천서를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국장의 임용 등) ①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피지정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장의 임용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별정우체국장 임용추천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장으로 임용되는 자는 관할체신청장앞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	②국장으로 임용되는 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앞에서 별지 제2호서식

현 행	개 정 안
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③피지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추천한 국장의 면직을 관할체신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피지정인의 요청을 받은 관할체신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피지정인은 임용추천한 국장이 임용된 후 1년 이내에는 면직을 요청할 수 없다.	③피지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 추천한 국장의 면직을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피지정인은 임용 추천한 국장이 임용된 후 **3년 이내에는** 면직을 요청할 수 없다.
제3조(직원의 채용) ①국장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정원 및 제11조의7에 따라 조정된 정원의 범위에서 그 별정우체국을 관할하는 우체국장(이하 "관할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직원을 공개경쟁시험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종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특별채용할 수 있다.	제3조(직원의 채용) ①**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채용지침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후보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1. 사무원: 정보처리기능사·정보기기운용기능사·전자계산기기능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산회계운용사 3급·워드프로세서 3급·컴퓨터활용능력 3급·인터넷정보관리사 3급 이상의 자격 중 1개 이상의 자격 소지자	**< 삭 제 >**
2. 집배원: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	**< 삭 제 >**

현 행	개 정 안
면허(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소지자는 제외한다)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정보처리기능사·정보기기운용기능사·전자계산기기능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산회계운용사 3급·워드프로세서 3급·컴퓨터활용능력 3급·인터넷정보관리사 3급 이상의 자격 중 1개 이상의 자격 소지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관할국장 또는 국장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채용지침에 따라 채용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채용 후보자 중에서 직원을 임용하여야 한다.**
제4조(직원의 직종 및 직급) 직원의 직종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직원의 직종 및 직급) 직원의 직종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구비서류) ①신규 임용되는 국장은 관할 체신청장에게, 신규 채용되는 직원은 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지정인이 국장으로 임용되는 때에는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의 사본의 제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구비서류) ①신규 임용되는 국장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직원은 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지정인이 국장으로 임용되는 때에는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의 사본 제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최종학력증명서 1통	1. 최종학력증명서 1통

현 행	개 정 안
2. 경력증명서 1통	2. 경력증명서 1통
3. 면허증 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사본 1통	3. 면허증 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사본 1통
4.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1통(직원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사본**
5.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실시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통	5.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실시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통
6. 사진(탈모상반신명함판) 6매	6. 사진(탈모상반신명함판) 6매
7. 민간인신원진술서 4통	7. 민간인신원진술서 4통
8. 선서문(국장에 한한다)	8. 선서문(국장에 한한다)
9. 별지 제3호서식의 신원보증서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원보증보험증권 1통(국장 및 사무원의 경우에 한한다)	9.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원보증서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원보증보험증권 1통(국장 및 사무원의 경우에 한한다)
10. 신원보증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신원보증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 체신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현 행	개 정 안
임용되는 국장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규 임용되는 국장 및 직원, 신원보증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장 및 직원을 신규임용 및 신규채용할 때에는 국장에 대하여는 관할체신청장이, 직원에 대하여는 국장이 각각 임용 및 채용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장 및 직원을 신규 임용할 때에는 국장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직원에 대하여는 국장이 각각 임용 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6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7조(직원의 채용연령) ①직원의 신규채용연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체신관서(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사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그 채용연령의 상한은 50세이하로 한다.<개정 1993.5.1.>	제7조(직원의 채용연령) ①직원의 신규채용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원 : 18세이상 35세이하	**1. 사무원 : 18세 이상**
2. 집배원 : 18세이상 50세이하	**2. 집배원 : 18세 이상**
②체신관서의 기구개편으로 면직되는 직원을 계속하여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그 채용연령의 상한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년 미만으로	②우정사업본부 및 하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면직되는 직원을 계속하여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그 채용연령의 상한은 제10조제1항 따른

현 행	개 정 안
한다.	정년 미만으로 한다.
제7조의2(시보임용) ①국장 또는 직원을 신규임용 또는 채용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한다. ②휴직한 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국장 및 직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장 또는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제7조의2(시보 임용) ①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이 국장 또는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한다. ②휴직한 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국장 및 직원이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에 대하여 국장은 직원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시킬 수 있다.
제7조의3(시보임용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1. 정규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의 국가·지방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에 상당하는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경우 2. 국장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퇴	제7조의3(시보임용의 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1. 정규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의 국가·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에 상당하는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국장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퇴

현 행	개 정 안
직당시의 직급이나 그 이하의 직급에 상당하는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경우	직당시의 직급이나 그 이하의 직급에 상당하는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제8조(당연퇴직) ①법 제3조제3항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해지 또는 취소된 때에는 국장 및 직원은 당연퇴직된다. 다만, 피지정인의 추천에 의하여 임용된 국장이 그 별정우체국의 업무를 인수하여 새로이 피지정인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장 또는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때로부터 당연퇴직된다.	제8조(당연 퇴직) ①법 제3조제3항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별정우체국 지정이 해지 또는 취소된 때에는 국장 및 직원은 당연 퇴직된다. 다만, 피지정인의 추천에 의하여 임용된 국장이 그 별정우체국의 업무를 인수하여 새로이 피지정인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장 또는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때로부터 당연 퇴직된다.
제9조(직권면직) ①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을, 국장은 직원을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정원의 개폐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긴 때 2.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제9조(직권면직) ①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을, 국장은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우정사업본부 및 하부조직의 개편 또는 정원 조정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긴 때 2.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현 행	개 정 안
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한 때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휴직기간 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 소지자로 특별채용된 자가 그 자격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5.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가 그 자격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관할 지방우정청장 및 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관할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관할 지방우정청장 및 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또는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 및 징계처분사실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또는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	④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

현 행	개 정 안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할 지방우정청 또는 해당 별정우체국을 관할하는 우체국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항제1호에 따라 면직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 또는 총괄우체국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제4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관할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한다.	⑤제4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한다.
⑥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원 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⑥제1항제3호에 따른 직권 면직일은 휴직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
제10조(정년) ①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10조(정년) ①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삭제<1998.6.25.>	②삭제<1998.6.25.>
③국장이 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상한연령에 달한 날 및 직원이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③국장이 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상한연령에 달한 날 및 직원이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제11조(직원의 임면보고) 국장은 직원을 임면한 때에는 임면보고서에 인사기록카드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관할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직원의 임면보고) 국장은 직원을 임면한 때에 총괄우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승진) 직원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제11조의2(승진) 직원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제11조의3(승진임용의 방법) ①관할국장은 별정우체국직원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당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원의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직원을 승진임용한 후 그 결과를 관할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별정우체국직원승진심사위원회는 관할국장이 소속된 우체국(이하 "관할우체국"이라 한다)단위로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3(승진임용의 방법) ①총괄우체국장은 별정우체국직원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원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직원을 승진 임용한 후 그 결과를 총괄우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별정우체국직원승진심사위원회는 총괄우체국 단위로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4(승진소요최저연수등)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1조의4(승진 소요 최저 연수 등) 직원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1조의5(직원의 전보) ①관할국장은 직원의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정우체국의 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는 연고지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의5(직원의 전보) ①총괄우체국장은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정우체국의 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는 연고지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의6(전보의 제한) 관할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정우체국의 직원을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원을 전보하는 경우 2.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11조의6(전보의 제한) 총괄우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정우체국의 직원을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1. 우정사업본부 및 하부조직의 개편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원을 전보하는 경우 2.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11조의7(정원조정) 관할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업무의 양 및 성질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별정우체국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의7(정원의 조정)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업무량과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별정우체국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3장 보수	제3장 보수
제12조(호봉의 획정) ①호봉획정에 관하여는 국장 및 사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중 일반직공무원의 호봉획정에 관한 규정을, 집배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중 기능직공무원의 호봉획정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국장 및 직원이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환산한 경력연수를 합산하여 정산한 호봉으로 한다.	제12조(호봉의 획정) ①보수지급을 위한 호봉의 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되 국장 및 사무원의 경우 일반직공무원 호봉획정 기준을, 집배원의 경우 기능직공무원의 호봉획정에 관한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②국장 및 직원이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환산한 경력연수를 합산하여 정산한 호봉으로 한다.
제13조(승급) 호봉간의 승급에 관하여는 국장 및 사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중 일반직공무원의승급에관한규정을, 집배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중 기능직공무원의승급에관한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3조(승급) 호봉 승급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되 국장 및 사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기준을, 집배원의 경우 기능직 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제14조(국장 및 직원의 보수) ①우정사업본부장은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장 및 직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월액과 수당상당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국장 및 직원의 보수) ①우정사업본부장은 국장 및 직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월액과 수당상당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월액과 수당상당액은 국장의 경우에는 별표 3, 직원의 경우에는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봉급월액과 수당상당액은 국장은 별표3, 직원은 별표4를 각각 적용한다.
제15조 삭제<1993.5.1>	제15조 삭제<1993.5.1>
제16조(보수지급방법등)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보수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보수 지급 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수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의2(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②우정사업본부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	제16조의2(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우정사업본부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지급

현 행	개 정 안
를 제외한다.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제16조의3(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통보) ①명예퇴직수당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②우정사업본부장은 매년 2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인원·신청기간·지급방법·지급일 그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각 별정우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3(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통보) ①명예퇴직수당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②우정사업본부장은 매년 2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인원, 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각 별정우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4(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절차 등)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퇴직원과 인사기록카드	제16조의4(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절차 등)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퇴직원과 인사기록카드

현 행	개 정 안
사본 및 급여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관할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국장은 지체 없이 그 신청서류를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 체신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류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관할 체신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선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상위직직원 2. 장기근속직원 ④관할 체신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관할 체신청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개시일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사본 및 급여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총괄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우체국장은 지체 없이 그 신청서류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류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상위직 직원 2. 장기근속 직원 ④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총괄우체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명예퇴직일까지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자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의5(명예퇴직수당의 반납)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퇴직한 직원이 다시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의5(명예퇴직수당의 반납)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퇴직한 직원이 다시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6조의6(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①법 제10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사람이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 산정 대상기간(별정우체국 직원 퇴직 당시의 정년 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종전 16조의6은 16조의 8로 이동]
< 신 설 >	**제16조의7(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현 행	개 정 안
	받은 사람이 법 제1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③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을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재임용 하고자 하는 국장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재임용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체 없이 환수고지서를 발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0조의2제3항**

현 행	개 정 안
	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한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국장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해당 직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6조의6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 요청을 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16조의7은 16조의 9로 이동]
제16조의6(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 ①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장 또는 직원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로서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계획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국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지정취소, 정원의 개폐,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	제16조의8(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 ①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장 또는 직원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제1항3호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 취소일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국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 하며,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정산금 지급대상이 되는

현 행	개 정 안
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②조기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조기퇴직 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제16조의7(조기퇴직수당의 지급절차) ①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조기퇴직원과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조기퇴직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국장은 지체 없이 그 신청서를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 체신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신청서류를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제16조의9(조기퇴직수당의 지급절차) ①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조기퇴직원과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조기퇴직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총괄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우체국장은 지체 없이 그 신청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신청서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괄우체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

현 행	개 정 안
한다.	하여야 한다.
제16조의8(세부지침) 근속연수의 계산, 잔여기간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 등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그 밖에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10(세부지침) 근속연수의 계산, 잔여기간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 등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그 밖에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4장 복무	제4장 복무
제17조(성실복무의무) 국장 및 직원은 신속·정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친절과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17조(성실복무 의무) 국장 및 직원은 신속·정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친절과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18조(근무기강의 확립) 국장 및 직원은 법령과 우정사업본부장·관할체신청장 또는 국장이 발하는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근무기강의 확립) 국장 및 직원은 법령과 우정사업본부장·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근무시간) 국장 및 직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의한다.	제19조(근무시간) 국장 및 직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의한다.
제20조(국장직무의 대행) 국장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	제20조(국장직무의 대행) 국장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

현 행	개 정 안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관할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관할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한 사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총괄우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한 사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삭제<2010.6.29>	제21조 삭제<2010.6.29>
제22조(휴직) ①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체신청장 또는 국장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②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장에 대하여는 관할체신청장이, 직원에 대하여	제22조(휴직)①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4.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②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장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직원에

현 행	개 정 안
는 국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대하여는 국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직원(국장을 포함한다)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직원(국장을 포함한다)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2.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삭제<2010.6.29.>	3. 삭제<2010.6.29.>
③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3년 이내로 하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한 인정 여부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결정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3. 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자직원의 경우에는 자	4.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자직원의 경우에는 자

현 행	개 정 안
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5. 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6. 삭제<2010.6.29.>	6. 삭제<2010.6.29.>
④관할체신청장 또는 국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휴직기간을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에 산입한다.	④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휴직기간을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에 산입한다.
제23조(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국장 및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3조(휴직의 효력) ①휴직 중인 국장 및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국장은 관할체신청장에게, 직원은 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체신청장 및 국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국장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직원은 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우정청장 및 국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이 만료된 국장 및 직원이 30일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된다.	③휴직기간이 끝난 국장 및 직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제23조의2(휴직자의 복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후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복직시켜야 한다.	제23조의2(휴직자의 복직)관할 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복직되는 때에는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복직시켜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휴직기간중의 보수) ①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상의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하며 결핵성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휴직기간 중의 보수) ①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그 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직위의 해제) ①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체신청장은 국장에 대하여, 관할국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제25조(직위의 해제) ①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에 대하여, 총괄우체국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삭제 ②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현 행	개 정 안
소멸된 때에는 관할체신청장 또는 관할국장은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관할체신청장 또는 관할국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관할체신청장 또는 관할국장은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와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6조(휴가의 종류) 국장 및 직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26조(휴가의 종류) 국장 및 직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27조(연가일수) ①국장 및 직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제27조(연가일수) ①국장 및 직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현 행	개 정 안
재직기간별 /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 3일 6월 이상 1년 미만 /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6년 이상 / 21일	재직기간별 /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 3일 6월 이상 1년 미만 /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6년 이상 / 21일
②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하되 그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하되 그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한정한다)	1.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며,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3.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국장 또는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③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국장 또는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국장 또는 직원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국장 또는 직원
2. 제2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국장 또는 직원	2. 제27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국장 또는 직원
제27조의2(연가계획 및 허가) ①관할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국장 또는 직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연가계획 및 허가) ①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국장 및 직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국외여행이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관할국장 또는 국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⑤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국장 또는 직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국장 또는 직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관할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해의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의3(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6.2.3.>	제27조의3(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②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②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 일수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뺀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해당연도 휴직기간(개월)×해당연도 연가일수 --- 12(월)	해당연도 휴직기간(개월)×해당연도 연가일수 --- 12(월)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제2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제28조(병가) ①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국장의 경우에는 관할국장이, 직원의 경우에는 국장이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7	제28조(병가) ①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

현 행	개 정 안
조의3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서 빼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당해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병가일수가 7일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병가일수가 7일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공가)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국장의 경우에는 관할국장이, 직원의 경우에는 국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29조(공가)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할 수 있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할 때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가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삭제<2006.10.27.>	5. 삭제
6.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

현 행	개 정 안
	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신 설 >	**8.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신 설 >	
제30조(특별휴가) ①국장 또는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30조(특별휴가) ①국장 또는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임신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본인의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산후에 45일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본인의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산후에 45일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여자인 국장 또는 직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여성인 국장 또는 직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인 국장 또는 직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인 국장 또는 직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⑤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현 행	개 정 안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삭제<2006.2.3.>	⑥삭제<2006.2.3.>
⑦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장 및 직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국장 및 직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조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장 및 직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국장 및 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조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사산한 경우로서 그 국장 또는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⑧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여성으로서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사산한 경우 그 국장 또는 직원이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하거나 사산한 국장 또는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하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하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신 설 >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국장 또는 직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31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31조의2(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칙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31조의2(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칙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32조 삭제<1993.5.1>	제32조 삭제<1993.5.1>
제33조(복장 및 신분증등) ①국장 및 직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33조(복장 및 신분증 등) ①국장 및 직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관할체신청장은 국장에게, 국장은 직원에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	②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에게, 국장은 직원에게 지식경제부장관이

현 행	개 정 안
하는 바에 의하여 신분증을 발급한다.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분증을 발급한다.
③관할체신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발급한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발급한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4조(교육훈련) 국장 및 직원은 공무자세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소정의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교육훈련) 국장 및 직원은 공무자세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소정의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상벌	제5장 상벌
제35조(포상) 지식경제부장관은 평소 직무에 성실하고,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한 국장 및 직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5조(포상) 지식경제부장관은 평소 직무에 성실하고,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한 국장 및 직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6조(징계) ①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장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체신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에 직원에 대하여는 관할국장 또는 국장이 관할우체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에 각각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제36조(징계) ①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직권으로 면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국장 및 직원(직원의 경우에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방우정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장직원징계위원회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에, 직원(**중**

현 행	개 정 안
한다.	**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이 총괄우체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에 각각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수탁자로서의 본분에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수탁자로서의 본분에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관할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은 제1항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 및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징계의 의결요구·의결절차 및 그 집행과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중 보통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 및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징계의 의결요구·의결절차 및 그 집행과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중 보통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징계 의결 요구기준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준용한다.**
< 신 설 >	**제36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36조에**

현 행	개 정 안
	따라 국장 및 직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중 징계부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37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중징계), 감봉·견책(경징계)으로 구분한다.**
제38조(징계의 효력) ①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국장 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제38조(징계의 효력) ①**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것이며,**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 중 국장 또는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②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③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④국장 또는 직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승진 또는 승급될 수 없다.	④국장 또는 직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승진 또는 승급될 수 없다.
1. 정직 : 18월	1. **강등·정직 : 18월**
2. 감봉 : 12월	2. 감봉 : 12월
3. 견책 : 6월	3. 견책 : 6월
제39조(해임등의 보고) 관할체신청장은 국장을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해임 등의 보고)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을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인사기록	제6장 인사기록
제40조(인사 관계 서류의 관리) ①관할체신청장은 국장에 대한 인사관계서류를, 국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관계서류를 작성·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인사 관계 서류의 관리) ①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에 대한 인사 관계 서류를, 국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 관계 서류를 작성·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국장 또는 직원의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 항상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②국장 또는 직원의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 항상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③국장 및 직원의 임용 또는 채용시에 구비한 서류와 임용후의 신상변동에 관한 서류는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보존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의 임용 시에 구비한 서류와 임용 후의 신상변동에 관한 서류는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보존하여야 한다.
④국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말소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중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국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말소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중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신원보증	제7장 신원보증
제41조(보증인의 확인) 관할체신청장 또는 국장이 제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당해국장 또는 직원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보증여부를 신원보증인에게 조회하거나 직접 면접하여 확인을 받아 이를 해당 신원보증서에 첨부·보존하여야 한다.	제41조(보증인의 확인) ①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이 제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신원보증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보증여부를 신원보증인에게 조회하거나 직접 면접하여 확인을 받아 이를 해당 신원보증서에 첨부·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원 보증시 당해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과 국장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
제42조(보증인의 재산조사등) ①관할체신청장 또는 국장은 신원보증인의 재산상태 및 그 적부의 확인을 위하여 연 1회이상 재산증명서의 발급기관에 조회하여야 한다.	제42조(보증인의 재산조사 등) ①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신원보증인의 재산상태 및 그 적부의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재산증명서의 발급기관에 조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결과 보증인의 재산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증인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월이내에 보증인을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결과 보증인의 재산 변동으로 인하여 보증인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증인을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장 또는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체신청장은 당해국장을, 국장은 당해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③국장 또는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보증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해당 국장을, 국장은 해당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
부칙 <제787호, 1987.5.21>	부칙 <제787호, 1987.5.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장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별정우체국장으로 임용된 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67세로 한다.<개정 1998.6.25>	②(국장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별정우체국장으로 임용된 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67세로 한다.<개정 1998.6.25>
③(직원의 직종구분에 관한 경과조	③(직원의 직종구분에 관한 경과조

현 행	개 정 안
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직원은 이 규칙 시행일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직원은 이 규칙 시행일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7급일반직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제수당 상당액을 받고 있는 사무원 / 사 무 장	7급일반직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제수당 상당액을 받고 있는 사무원 / 사 무 장
8급일반직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제수당 상당액을 받고 있는 사무원 / 사무주임	8급일반직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제수당 상당액을 받고 있는 사무원 / 사무주임
9급일반직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제수당 상당액을 받고 있는 사무원 / 사무보조	9급일반직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제수당 상당액을 받고 있는 사무원 / 사무보조
기능직10등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액 및 제수당 상당액을 받고 있는 집배원 또는 교환원 / 집배원3종 또는 교환원 3종	기능직10등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액 및 제수당 상당액을 받고 있는 집배원 또는 교환원 / 집배원3종 또는 교환원 3종
부칙 <제818호, 198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8호, 198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4호, 1991.6.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의 연장신청에 관한 특례) 1991년 6월 30일 당연퇴직 예정인 별정우체국의 직원이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의 근무상한연령연장신청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6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834호, 1991.6.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의 연장신청에 관한 특례) 1991년 6월 30일 당연퇴직 예정인 별정우체국의 직원이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의 근무상한연령연장신청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6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857호, 1993.5.1>	부칙 <제857호, 1993.5.1>

현 행	개 정 안
이 규칙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 1998.6.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장 및 직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국장 및 직원중 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국장중 종전의 체신부령 제787호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개정령 부칙 제2항 및 이 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부칙 <제50호, 1998.6.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장 및 직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국장 및 직원중 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국장중 종전의 체신부령 제787호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개정령 부칙 제2항 및 이 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현 행	개 정 안
2000년 12월 31일·2001년 6월 30일·2001년 12월 31일·2002년 6월 30일 및 2002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③종전의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2000년 12월 31일·2001년 6월 30일·2001년 12월 31일·2002년 6월 30일 및 2002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③종전의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부칙 <제124호, 2002.2.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원의 직급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규정된 직급에 종사하는 직원은 이 규칙 시행일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되는 직급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으로 본다.	부칙 <제124호, 2002.2.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원의 직급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규정된 직급에 종사하는 직원은 이 규칙 시행일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되는 직급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으로 본다.

종전의 직급	개정된 직급
	집배 6급
	집배 7급
집배 1종	집배 8급
집배 2종	집배 9급
집배 3종	집배 10급

종전의 직급	개정된 직급
	집배 6급
	집배 7급
집배 1종	집배 8급
집배 2종	집배 9급
집배 3종	집배 10급

부칙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51	부칙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51

현 행	개 정 안
호, 2004.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호, 2004.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 2005.6.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장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국장으로 재직중인 자의 정년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7년 5월 20일 이전에 임용된 자는 67세, 1987년 5월 21일 이후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용된 자는 64세로 한다.	부칙 <제172호, 2005.6.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장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국장으로 재직중인 자의 정년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7년 5월 20일 이전에 임용된 자는 67세, 1987년 5월 21일 이후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용된 자는 64세로 한다.
부칙 <제186호, 2006.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국장 또는 국장은 부칙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국장 또는 직원 중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부칙 <제186호, 2006.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국장 또는 국장은 부칙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국장 또는 직원 중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4호, 2006.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호, 2006.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0호, 200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0호, 200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호, 2006.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호, 2006.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까지 생략 ⑭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제33조제2항, 제35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중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을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으로	부칙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까지 생략 ⑭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제33조제2항, 제35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중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을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으로

현 행	개 정 안
한다. ⑮ 부터 <64> 까지 생략	한다. ⑮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74호, 2009.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휴직을 신청하는 국장 또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연가일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격 소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터넷정보검색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터넷정보관리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본다. 제5조(직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직원의 정년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부칙 <제74호, 2009.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휴직을 신청하는 국장 또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연가일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격 소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터넷정보검색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터넷정보관리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본다. 제5조(직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직원의 정년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112호, 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호, 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 2010.6.29>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 2010.6.29>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7호, 2011.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관할체신청장"을 각각 "관할 지방우정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할체신청"을 "관할 지방우정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할체신청장"을 "관할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관할체신청장"을 각각 "관할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7호, 2011.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관할체신청장"을 각각 "관할 지방우정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할체신청"을 "관할 지방우정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할체신청장"을 "관할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관할체신청장"을 각각 "관할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 신 설 >	**부칙 <제 호, 2011. . >**

현 행	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별표1의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배10급 정원 조정 및 집배10급 직원에 대한 집배9급으로의 승진 임용에 관한 특례)국장은 이 규칙 공포 당시 집배10급으로 근무 중인 직원을 제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배9급 직원으로 각각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 **1. 이 규칙 공포일 현재 집배10급 임용일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직원 : 이 규칙 공포일부터 10일 이내** **2. 이 규칙 공포일 현재 집배10급 임용일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경과한 직원 : 2011년 12월 31일** **3. 이 규칙 공포일 현재 집배10급 임용일부터 2년 미만 경과한 직원 : 2012년 5월 23일**

< 개정 전 >

[별표 1] <개정 2002.2.25>

직원의 직종 및 직급(제4조관련)

직종	사무원			집배원				
직급	사무장	사무주임	사무보조	집 배 6 급	집 배 7 급	집 배 8 급	**집 배 9 급**	**집 배 10 급**

< 개정 후 >

[별표 1]

직원의 직종 및 직급(**제4조 관련**)

직종	사무원			집배원			
직급	사무장	사무주임	**사무원**	집 배 6 급	집 배 7 급	집 배 8 급	**집 배 9 급**

< 변경 없음 >

[별표 2] <개정 2010.6.29>

국장 및 직원의 경력환산율표(제12조제2항관련)

구분	내용	환산율
1. 별정우체국 근무경력	「별정우체국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장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제외한다.	10할
2. 공무원경력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복무경력을 포함하되, 무관후보생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10할
	나.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시행일전의 경노무고용직외의 고용직과 동 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8할
3. 유사경력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1)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102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107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 시행일 전의 임시직·촉탁·잡급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1)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가 인정하는 경력 (3)「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및 경찰	8할. 다만, (2)의 경력은 5할

	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4)「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5)「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훈련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을 제외한다. (7) 「재외공관고용원 규정」(각령 제901호)에 의한 고용원으로 근무한 경력	
	나.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된 업무보조원으로 근무한 경력	8할
	다.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및 별정우체국의 운영개선을 위한 연구와 직원의 공제사업을 취급하는 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8할
	라. 기타 경력 (1)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 기타 정부간 국제기구)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가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3)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4) 사립학교에서 정규 교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5) 경찰공무원의 임용전「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의 교육기간	 7할 7할 7할 7할 5할

< 변경 없음 >

[별표 3] <개정 2002.2.25>

국장의 보수표(제14조제2항관련)

직 종	보 수
국 장	일반직 6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각종수당 상당액

< 개정 전 >

[별표 4] <신설 2002.2.25>

직원의 보수표(제14조제2항관련)

직종 및 직급		보 수
사무원	사무장	일반직7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각종수당 상당액
	사무주임	일반직8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각종수당 상당액
	사무보조	일반직9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각종수당 상당액
집배원	집배6급	기능6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각종수당 상당액
	집배7급	기능7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각종수당 상당액
	집배8급	기능8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각종수당 상당액
	집배9급	기능9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각종수당 상당액
	집배10급	기능10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각종수당 상당액

< *개정 후* >

[별표 4] <개정 2011.00.00 >

직원의 보수표(제14조제2항관련)

직종 및 직급		보 수
사무원	사무장	일반직7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각종수당 상당액
	사무주임	일반직8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각종수당 상당액
	사무원	일반직9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각종수당 상당액
집배원	집배6급	기능6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각종수당 상당액
	집배7급	기능7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각종수당 상당액
	집배8급	기능8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각종수당 상당액
	집배9급	기능9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각종수당 상당액

< 변경 없음 >

[별표 5] <신설 2002.2.25>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제16조의3제1항관련)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 정 기 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60+ $\frac{\text{정년잔여월수}-60}{2}$]
3. 10년 초과인 자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 고 :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개정 전 >

[별표 6] <개정 2006.2.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30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7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개정 후 >

[별표 6]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30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 신 설 >

[별표 7]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16조의6 관련)

구분	적용대상	산 정 기 준
환수금	1. 법 제10조의2 제3항제1호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2. 법 제10조의2 제3항제2호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 월수/2)}
	3. 법 제10조의2 제3항제3호 해당자	가.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전액
정산금	법 10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임용 후의 근무기간이 환수금 산정대상기간(명예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보다 짧은 자	재임용시 환수금액(이자 제외)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초과 10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수/2)}

비고

1.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은 명예퇴직 당시에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 별표 5의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을 말한다.
2. "재임용 후 근무 월수"는 재임용일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말한다.
3. 별표 1의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에 따른 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이 경과된 후 재임용되는 자는 환수대상에서 제외한다.
4. 재임용후 퇴직시의 정산금 지급액은 재임용 당시의 환수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개정 전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89.12.30>

별정우체국장임용추천서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 사람을 우체국장으로 임용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별정우체국피지정인 (인)

○○체신청장 귀하

3102-425A 190mm×268mm

82.7.28 승인 (신문용지 54g/㎡)

< 개정 후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00.00>

별정우체국장임용추천서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 사람을 우체국장으로 임용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별정우체국피지정인 (인)

○○**지방우정청장** 귀하

< 개정 전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6.29>

선 서

본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우체국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업무상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지식경제부공무원 및 소속직원과 융화 단결하고, 모든 고객에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봉사한다.

위에서 선서한 사항에 대하여는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우체국장 (서명 또는 인)

○○체신청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개정 후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00.00>

선 서

본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우체국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에라도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지식경제부공무원 및 소속직원과 융화 단결하고, 모든 고객에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봉사한다.

위에서 선서한 사항에 대하여는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우체국장 (서명 또는 인)

○○**지방우정청장** 귀하

< 개정 전 >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2.2.25>

신원보증서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 사람을 별정우체국 (장 / 직원)으로 재직중 향후 2년간 직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변상책임이 확정되고 당해 (국장 / 직원)이 변상하지 못할 때에는 본인 등이 공동하여 변상할 것을 서약하고 신원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대보증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대보증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대보증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체신청장 귀하

< 개정 후 >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1.00.00>

신원보증서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 사람을 00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 국장 직원) 으로 (지정 채용) 함에 있어 향후 2년간 직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변상책임이 확정되고 위 사람이 변상하지 못할 때에는 본인 등이 공동하여 변상할 것을 서약하고 보증하기에 본 신원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대보증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대보증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대보증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방우정청장** 귀하

< 개정 전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6.12>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신청인기재란	①소속			②직종구분	□사무원 □집배원	③직 급 (호봉)	
	④성명	한글		⑤주민등록번호			
		한자		⑥주소	□□□-□□□		
	⑦전화번호 (자택)			⑧근속기간	년 월	⑨정년일	년 월 일
	⑩비위·형벌 사항	□있음 □없음		□비위조사중 □수사진행중 □형사재판 계류중 □형확정의 경우·확정일 : . . . ·형 량 :			
소속기관기재란	⑪수당청구액	원					
	⑫정년잔여기간(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년 월)		⑬산출내역			
	⑭비위·형벌 사항 확인	□있음 □없음		□비위조사중 □수사진행중 □형사재판 계류중 □형확정의 경우·확정일 : . . . ·형 량 :			
		확인	인사담당	(인)	연금담당	(인)	감사담당 (인)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서약하며,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급여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국장) [인]

우체국장 귀하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별정우체국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우체국장 [인]

○○체신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개정 후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00.00>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table>
<tr><td rowspan="6">신청인기재란</td><td colspan="2">①소속</td><td></td><td>②직종구분</td><td>□사무원
□집배원</td><td>③직 급
(호봉)</td><td></td></tr>
<tr><td rowspan="2">④성명</td><td>한글</td><td></td><td>⑤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한자</td><td></td><td>⑥주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⑦전화번호
(자택)</td><td></td><td>⑧근속기간</td><td>년 월</td><td>⑨정년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2">⑩비위·형벌
사항</td><td>□있음
□없음</td><td colspan="4">□비위조사중 □수사진행중 □형사재판 계류중
□형확정의 경우·확정일 : . . .
·형 량 :</td></tr>
<tr><td colspan="3">⑪수당청구액</td><td colspan="5">원</td></tr>
<tr><td rowspan="3">소속기관기재란</td><td colspan="2">⑫정년잔여기간(수당지급대상기간)</td><td>년 월
(년 월)</td><td>⑬산출내역</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⑭비위·형벌
사항 확인</td><td>□있음
□없음</td><td colspan="4">□비위조사중 □수사진행중 □형사재판 계류중
□형확정의 경우·확정일 : . . .
·형 량 :</td></tr>
<tr><td>확인</td><td>인사담당</td><td>(인)</td><td>연금담당</td><td>(인)</td><td>감사담당</td><td>(인)</td></tr>
<tr><td colspan="8">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서약하며,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급여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8">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국장) [인]
우체국장 귀하</td></tr>
<tr><td colspan="8">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별정우체국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우체국장 [인]
○○지방우정청장 귀하</td></tr>
</table>

< 변경 없음 >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02.2.25>

명예퇴직원

소 속
직 급
성 명

상기 본인은 사유로 자유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원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개정 전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9.6.12>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

신청인기재란	①소속			②직종구분	□사무원 □집배원	③직 급 (호봉)		
	④성명	한글		⑤주민등록번호				
		한자		⑥주소	□□□-□□□			
	⑦전화번호 (자택)			⑧근속기간	년 월	⑨최초 임용일	년 월 일	
	⑩비위·형벌 사항		□있음 □없음	□비위조사중 □수사진행중 □형사재판 계류중 □형확정의 경우·확정일 : . . . ·형 량 :				
소속기관기재란	⑪수당청구액		원					
	⑫산출내역							
	⑬비위·형벌 사항 확인		□있음 □없음	□비위조사중 □수사진행중 □형사재판 계류중 □형확정의 경우·확정일 : . . . ·형 량 :				
		확인	인사담당	(인)	연금담당	(인)	감사담당	(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확인서 1부
3.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국장) [인]

우체국장 귀하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별정우체국직원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우체국장 [인]

○○체신청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개정 후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00.00>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

신청인기재란	①소속			②직종구분	□사무원 □집배원	③직 급 (호봉)		
	④성명	한글		⑤주민등록번호				
		한자		⑥주소	□□□-□□□			
	⑦전화번호 (자택)			⑧근속기간	년 월	⑨최초 임용일	년 월 일	
	⑩비위·형벌 사항		□있음 □없음	□비위조사중 □수사진행중 □형사재판 계류중 □형확정의 경우·확정일 : . . . ·형 량 :				
소속기관기재란	⑪수당청구액		원					
	⑫산출내역							
	⑬비위·형벌 사항 확인		□있음 □없음	□비위조사중 □수사진행중 □형사재판 계류중 □형확정의 경우·확정일 : . . . ·형 량 :				
		확인	인사담당	(인)	연금담당	(인)	감사담당	(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확인서 1부
3.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국장) [인]

우체국장 귀하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별정우체국직원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우체국장 [인]

○○**지방우정청장** 귀하

< 변경 없음 >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02.2.25>

조기퇴직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원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	
연 락 처	(02) 2195 - 1513